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시 전용구역 설치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66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2214066)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시 전용구역 설치 등(안 제26조의2 신설 등)	2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221406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10.
3. 회 부 일 : 2025.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시 전용구역 설치 등(안 제26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반려동물등 전용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등 관리수칙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며, 폭염 등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등의 위탁수화물 운송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반려동물등의 운송) ①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반려동물등”이라 한다)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항공기에 반려동물등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

현행	개정안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반려동물등 관리수칙(이하 “관리수칙”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 내용에 관하여 반려동물등을 위탁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u>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등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등의 위탁수화물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u>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칙 수립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u>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u><신설></u> 6. ~ 15.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24. (생략) ③ · ④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한 자</u> 6. ~ 15.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u> 4. ~ 2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검토의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하여금 운송 중인 동물이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동물의 운송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¹⁾

다만, 최근 항공기 위탁수화물로 운송된 반려동물이 폭염으로 온도 조절 기능이 없는 비행기 화물칸에서 사망하는 사건²⁾이 발생함에 따라 항공분야 특성에 맞게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2) SBS, 「‘혀 빼놓고’ 미동 없이 축축.. 비행기서 내린 견주 분통」, 2025.7.29.

국내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규정에 따르면 운송용기와 반려동물을 합한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기내동반이 가능하나, 7kg 초과 45kg 이하인 경우에는 화물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³⁾ 중형견 이상일 경우 등은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 이용 시 위탁수화물로 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의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시 위탁수화물 운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세계 항공사들이 참조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움직이기 충분한 공간과 통풍구를 갖춘 견고한 재질을 요구하는 등 운송용기의 요건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운송 용기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가 운송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3)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4) 참고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살아있는 동물 운송 규정」 참조(p.9)

두고 있지 않아 개정안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설비의무를 외항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기에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항공기의 구조 및 설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항공기 구조변경이 운항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가형식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⁵⁾ 전용구역 설치 시 추가적인 절차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종합할 때, 개정안을 통한 반려동물 보호 필요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항공업계의 제도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과 현실적인 이행여건에 대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반려동물의 항공운송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가 전무하며, 이를 국적항공사에만 적용 시 수익성 높은 화물칸의 활용도를 감소시켜 운영비용의 증가가 수반되는 등 국적항공사와 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항공업계 의견

국제표준(IATA) 및 미국(DOT)는 동물 운송 시 온도 및 환기가 가능한 화물칸 사용을 권고하고, 전용구역 설치의무는 없으며, 전용구역 설치는 항공기 구조변경에 따른 제작사 검토와 부가형식증명 등 복잡한 감항성 인증절차가 필수적으로, 항공기 구조변경시 고비용·운영부담 초래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

- (운송용기 가이드) 반려동물이 움직이기 충분한 공간과 통풍구*를 갖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방수 처리 필요

* 환기구는 운송용기 4면 전체 표면적의 최소 16%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

【IATA 생동물 규정 (LAR : Live Animal Regulation)】

Guidance for Dimensions of Container

To assist in determining the approximate size of the traveling container, the following formula may be useful. When calculating the minimum internal height of the container, the height of bedding should be added to the height of the animal.

Animal measurements:

A = length of animal from tip of nose to base/root of 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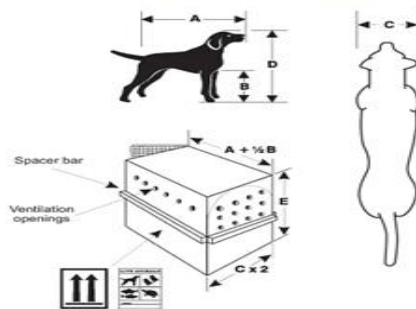
B = height from ground to elbow joint.

C = width across shoulders or widest point (whichever is the greater).

D = height of animal in natural standing position from top of the head or the ear tip to the floor (whichever is higher).

Note:

Measurements A, B, C and D for determining the container dimensions must relate to the largest animal.



The calculated dimensions are internal container dimensions.

Floor

The floor must be solid and leak-proof.

Roof

The roof must be solid, but ventilation holes and welded wire mesh are allowed over the whole surface provided that they do not reduce the integrity of the container and the strength of the roof itself.

Wooden containers: For containers made of wood or plywood, the minimum thickness of the roof must be 12 mm (1/2 in) for both dogs and cats.

Door

The door must be constructed of plastic, wood, plywood, welded or cast metal of sufficient thickness so as to preclude the animal from bending or distorting the door.

The door must form the whole of one end of the container. It can be either sliding or hinged.

For all containers using doors with locking pins, the pins must engage the container by at least 1.6 cm (5/8 in). The shipper must ensure that all hardware and fasteners are in place and serviceable.

Plastic containers: Doors made of plastic are permitted, provided that hinges and locking pins are made of metal of sufficient thickness.

When rigid plastic containers are used the door should be further secured by application of additional removable fasteners such as cable ties in the four corners of the door frame. Care must be taken when selecting the fasteners to ensure these will not cause injury to the animal or to the handling personnel.

There must be an adequate means of fastening and sealing for containers travelling to countries where sealing is required.

Venti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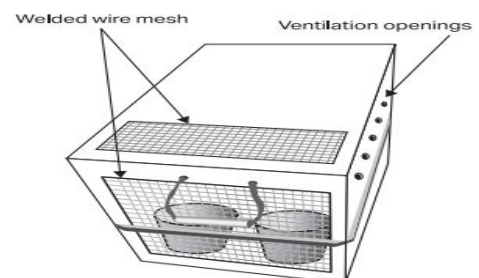
The total ventilated area must be at least 16% of the total surface of the four sides. The provision of additional ventilation openings on the roof or sides of the container or larger ventilation openings covered in welded wire mesh in order to increase the ventilation are permitted.

- △ Ventilation must be provided on all 4 sides of the container. Ventilation openings on the sides and back must be placed over the upper two-thirds of the container.

- △ One end of the container (which can be the door) must be ventilated.

The welded wire mesh insert covering ventilation openings must be securely fixed to the container so that the animal cannot dislodge it.

All openings must be nose and paw-proof, in the case of cats and small dogs these may have to be covered with a second layer of welded wire mesh. Where a second layer of welded wire mesh is required to make the container nose and paw proof both layers of welded wire mesh must meet the minimum standards prescribed for the species. It is very important that no animal has any surface or edge at which it can gnaw or scratch.



- (운송여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항목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에서 운송 거부하도록 권고

【IATA 살아있는 동물 운송 가능한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LIVE ANIMAL ACCEPTANCE CHECKLIST FOR ANIMALS TRAVELLING IN CABIN			
An example of the Live Animal Acceptance Checklist for animals travelling in cabin is shown hereafter. For all requirements related to the Checklist see section 10.1 of these Regulations.			
	YES	NO*	N/A
1. Information on the flight:			
Flight details:			
Ticket number:			
Date:			
Flight Origin:			
Destination:			
If the shipment is part of an interline agreement has the passenger/ shipper confirmed that all arrangements are in place for the interline sector?			
2. Information on the owner:			
Name:			
24- hour contact number:			
3. Questions to consider:			
Is species of animal provided?			
Is all necessary documentation provided (e.g. health certificate)?			
Is the animal clean and does it appear to be fit to travel?			
Has the owner confirmed the animal is not sedated?			
Is documentation available proving that the animal is at least 8 weeks old?			
4. Questions on the container to consider:			
Is the size of the container suitable for the animal?			
Does the consignment weight/size comply with the carrier's policy?			
For cats and dogs:			
• Can the animal sit, stand, turn around and lie down in a natural position?			
• Does the container have at least 16% ventilation of the 4 sides?			
• Does the container have ventilation on all 4 sides?			
Is the container leak and escape proof?			
Is the container clearly labelled with a live animal label?			
Does the container fully comply with IATA LAR standards?			
*IF ANY QUESTION IS ANSWERED WITH "NO", DO NOT ACCEPT THE SHIPMENT			
Submitted by (passenger/shipper):			
Print Name	Signature	Date	
Received by (acceptance agent):			
Print Name	Signature	Date	